



제 418국회 (정기회)
제 1 차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출 계약서류에 이자산정방식 등 정보 포함〉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65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진선미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7. 26.

다. 회 부 일 : 2024. 7.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하나인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2018년에 발생하는 등 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은행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 계약 시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3조).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계약서류</u> 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① ----- ----- ----- ----- ----- ----- <u>계약서류(제2조제1호가목·라목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u>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함)은 제23조에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및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에 따라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약서류의 종류와 설명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아래 [표 1]) 참고), 설명서의 내용에 이자율의 산출기준과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1] 현행법에 따라 대출 시 금융소비자가 받게 되는 서류 및 설명

법률	시행령	고시(감독규정)
계약서류(§23)	1. 금융상품 계약서 2. 금융상품의 약관 3. <u>금융상품 설명서</u> (§22)	-
설명서(§19) - 내용 1) <u>금리 및 변동 여부</u> ,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를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3) 저당권 등 <u>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u> ,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계약의 해지·해제 2. 신용에 미치는 영향 3.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연체 이자율 및 그 밖의 불이익 4. 계약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3)	1. <u>이자율의 산출기준</u> 2. 신용카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일정 비율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후에 지불하는 서비스의 위험성 및 관련 예시 나.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에 관한 사항(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한을 포함한다) (§12)

□ 또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은 자율적으로 마련한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 계약을 하는 경우 차주 관련 기초 정보와 산출한 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 전결금리를 포함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차주에게 제공하고 있음.¹⁾²⁾

○ 이는 개정안이 제안이유에서 언급하듯 과거 일부 은행이 고객의 소득정보나 담보정보를 과소 입력하거나 누락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³⁾ 그 해결을 위한 조치로 도입된 것임.⁴⁾⁵⁾

□ 개정안은 현재 고시(감독규정)와 은행 자율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현행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대출

1)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은행연합회 모범규준)」

제28조(대출금리 산정내역서) ① 은행은 대출에 대해 신규(갱신·연장을 포함한다)로 대출 조건을 확정된 경우 및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에 따라 기초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대출금리 산출을 위해 은행이 이용한 차주 관련 기초 정보와 산출한 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 전결금리를 일정한 서식(이하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라 한다)에 따라 차주에게 제공한다. 다만, 차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받은 차주가 가산금리 변동사유의 안내를 요구할 경우 은행은 신용등급의 변동, 담보가치의 변동, 우대금리 적용항목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 사유를 안내한다.

2)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저축은행중앙회 모범규준)」

제21조(대출금리 산정내역서) ① 저축은행은 대출에 대해 신규(갱신·연장을 포함한다)로 대출 조건을 확정된 경우 및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에 따라 기초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대출금리 산출을 위해 저축은행이 이용한 차주 관련 기초 정보와 산출한 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를 일정한 서식(이하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라 한다)에 따라 차주에게 제공한다. 다만, 차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 2018. 6. 22.

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보도자료,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 시행”, 2019. 4. 1.

5)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예시는 참고자료 참고.

성 상품 판매 시 금리 및 변동여부, 담보권 설정사항, 이자율 산출 기준 등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업권 자율규제에 따라 차주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내역서에는 차주의 직장·소득·담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법률에 규율할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 다만, 개정안과 같이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법률에 명시하게 될 경우 규율의 명확성을 높이고 대출금리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06

【참고자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예시)

이 내역서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고 계약의 주요사항인 대출금리를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기초정보]

고객님께서 은행에 제공하신 정보와 일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홍길동	고객번호	123-45678
구분		입력정보		
대출정보	대출명	직장인 0000 대출		
	대출금액	3천만원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취급후 1년 / 20.XX.XX 까지		
	신청여부	신규 / 연장 / 재약정 / 금리인하요구 등		
직장정보	직장명	00상사		
	직위	부장		
소득정보	연소득	5천만원		
	소득기간	최근 제출 소득 기준		
담보정보	담보물건	-		
	담보가치	-		
신용정보	신용등급	X등급(00사)		

※ 기준일 현재 고객님의 기초정보이며, 은행의 직위 분류 기준에 따라 고객님의 실제 직위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금리 산출결과] (* 아래 금리수준 및 우대폭 등은 가상의 수치를 제시한 것임)

상기 '입력정보'로 산출된 대출금리입니다. 다만, 대출상품별로 따로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은 상기항목 중 대출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a)				잔액기준 COFIX (2.02%)	
가산금리(b)				2.03%	
가 감 조 정 금 리	우 대 금 리 (c)	급여이체/연금수령	연 0.2%	△0.20%	최대 우대폭 0.6% 실제 우대 적용은 최대 우대폭 이내로 제한됩니다
		제세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연 0.1%	△0.10%	
		신용카드 실적	연 0.1%	△0.10%	
		적립식 상품 실적	연 0.1%	미해당	
		기타	연 0.3%	△0.30%	
	전결금리(d)	본부·영업점장 전결금리		△0.20%	
결정금리 [(a)+(b)-(c)-(d)]				잔액기준 COFIX(2.02%) + 1.23% = 3.25%	

※ 결정금리는 기준일 현재 산출한 대출금리로서, 여신실행일 현재 또는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도래 시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중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금리 변동내용은 소비자 요청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승진, 직장의 변동, 연소득 증가, 은행의 우수고객으로 선정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평가결과 등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상여신 :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등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가계대출에 한합니다. 다만, 대출상품별로 따로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은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보도자료,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 시행”, 2019. 4. 1.)